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새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1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새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김규남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 석, 박춘선, 서상열,
옥재은, 윤기섭, 이경숙,
이병윤, 이상욱, 이종환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항)
- 나.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소규모학교와 각종학교 선출관리위원회 운영방법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위탁형 각종학교 운영위원의 임기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위탁형 각종학교 학부모위원 임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
바. 연간 회의 개최 의무규정을 학교별 상황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6조)

사. 기타 상위법령의 조항 및 자구를 정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-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·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 제58조제1항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5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8조제4항”을 “영 제58조제4항제1호”로, “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, 이 경우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부모위원 :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

2. 교원위원 :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

3. 지역위원 :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

제4조제3항 중 “전일”을 “전날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4항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졸업”을 “졸업·수료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졸업한”을 “졸업·수료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결위된”을 “공석이 생겼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 중 “개의회”를 “회의를 시작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, 이 경우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위원의 선출 등) ①·② (생략)

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② 영 제58조제4항제1호-----
-----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학생 수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, 이 경우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부모위원 :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

2. 교원위원 :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

3. 지역위원 :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

제4조(위원의 선출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전
날-----.

④·⑤ (생략)

제5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·②
(생략)

<신설>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
연임할 수 있되, 보궐위원의 임
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
으로 한다. 다만, 「유아교육
법」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위
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
유치원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
의 임기는 「서울특별시립유치
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
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
른다.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
100명 미만인 학교와 모든 학생
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
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
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
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
영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선출관
리위원회 정수 등 구성 및 운영
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
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
----- 「유아교육
법」 제19조의3제6항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
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
운영하는 각종학교는 위원
의 임기를 1년 이상 2년의 범위에서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,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(생략)

제1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③ -----

----- . 다만,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-----

----- 회의를 시작하며-----
----- .